

취업지원센터규정

2017.06.27.제정	2017.10.01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	2019.06.01.일부개정
2020.05.01.일부개정	2021.06.01.일부개정	2022.04.01.일부개정	2025.01.15.일부개정
<u>2025.06.19.일부개정</u>			

<취업지원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취업상담에 관한 업무
2.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업무
3. 취업컨설팅(취업교육, 입사지원서 작성 지도, 면접지도 등)에 관한 업무
4. 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5. 취업 통계에 관한 업무
6. 취업동아리 운영에 관한 업무
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운영) ① 기초상담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한다.

② 상담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개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,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집단상담을 할 수 있다.

③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취업지도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업지도위원회를 둔다.

1. 취업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위원 과반수 요청에 의한 사항
4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교무처장, 단과대학 학장, 취업지원센터장, 진로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,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0.01., 2018.7.1., 2020.5.1.,

2021.6.1.,2022.4.1.,**2025.6.19.**)

-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⑤ 위원회의 간사는 취업 업무담당자로 한다.

제6조(취업지원실무위원회) ① 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**학생처장**과 취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**(개정 2025.6.19.)**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**학생처장**으로 한다.**(개정 2025.6.19.)**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 위원회의 간사는 취업 업무담당자로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타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부터 「취업지원실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 시행되었던 취업지원 운영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